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
회비관리 규정

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 회비관리 규정

제정 2021. 10. 19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 회비 납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비분담금액)

1. 회 장 : 연간 1,000만원
2. 수석부회장 : 연간 500만원 이상
3. 부 회 장 : 연간 300만원
4. 감 사 : 연간 60만원
5. 이 사 : 연간 60만원
6. 종목단체장 : 연간 30만원
7. 동체육회장 : 당연직 면제

제3조(회비의 조정)

회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승인하여야 한다.

제4조(회비의 납입)

① 회비는 당해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.

② 보선 또는 새로 선임되는 이사는 이사회 의결 전 이력서와 회비를 선납하여야 하며, 이사회 미승인 시 당사자에게 반환한다. 단, 회비 분담액은 선임월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산정한다.

제5조(회비 미납자에 대한 징계)

① 회비 미납자는 이사회에서 표결권 및 발언권을 제한한다.

② 회계연도 시작 후 5개월이 초과됨에도 미납시 사무국에서 제명조치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. 단, 사무국은 미납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납부안내를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하며, 3회차에는 제명조치됨을 명기한 후 통보

한다.

③ 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제명된 자는 체육회에 영구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, 총회에 대의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.

④ 종목단체장의 지회비가 미납되었을 시 해당 종목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되며, 체육회 정관 제9조제3항에 의해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.

제6조(미비사항)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등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 (2021. 10. 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